

市の再開發區域이 上溪洞뿐 아니라 곳곳에 널리 많이 再開發이 지금 속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投機가 없다는 것은, 金炳植委員님 地域은 그런지는 몰라도 本委員이 느껴 본 바에 의하면 이 再開發地域에 投機가 없다고 누가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이 만큼 혜택 준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 아닌가, 왜 投機가 벌어지느냐 하면 물론 어려운 庶民層이 사는데, 참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때를 잘못 만나서 집 한 칸 못 마련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地域에는 無爲徒食하는 者가 끼어들게 마련입니다. 그 無爲徒食者가 몇 %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再開發한다면 끼어들어서 꼭 災星을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惠택은 정말 實需要者가 못보고 엉뚱하게도 無爲徒食하는 者만 惠택을 보고, 또 다른 데로 도망가는 이러한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執行部의 原案을 同意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聲九 그러면 金炳植委員님은 修正動議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金炳植委員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聲九 그럼 이렇게 處理를 하겠습니까.

金炳植委員의 再開發 區域안에 있는 土地를 再開發施行 認可 당시와 그 후에 同一하게 10年 分割年 5% 利子로 하자는 修正動議案이 提案되었습니다.

再請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金委員님, 이 問題는 다음에 좀더 研究해서 새로 한 번 다루시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再請이 없으므로 일단 議題로 成立이 안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金炳植委員 좋습니다. 多數可決의 原則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는 市民들을 代辯했을 뿐이지 제가 여기서 혼자 이길 수 있습니까?

○委員長 李聲九 더 質問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問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면 第6項에 대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잠중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발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중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p>다음 각호와 같다.</p> <p>1. 영 제95조제2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p> <p>2. 제39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p> <p>3.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p> <p>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영 제95조제2항제2호·제6호·제10호·제11호·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p> <p>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할 때</p> <p>3.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p> <p>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p> <p>.....</p> <p>○委員長 李聲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94 市有財産管理計劃下半年變更(追加)2次計劃同意案에 대해서 審査하겠습니다.</p> <p>同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鄭興鎮委員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鄭興鎮委員 鄭興鎮입니다.</p>	<p>國家와 地方自治團體 間 相互 占有財産 交換 一環으로 國有地와 市有地를 交換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칫 잘못하면 곧 있을 民選 基礎自治團體長과 廣域團體長이 그 地方 財産을 쉽사리 잘못 處理할 수 있다는 이 우려에서 몇 가지를 質問하고자 합니다.</p> <p>大統領警護室에서 駐車場으로 占有 使用하고 있는 市有地 718坪과 우리 市가 무궁화동산 造成敷地로 使用하고 있는 國有地 517坪을 相互 交換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200坪 差異가 있지요?</p> <p>○財務局長 孫長鎬 네, 그렇습니다.</p> <p>○鄭興鎮委員 그럼 價格差異가 상당히 많이 날텐데.....</p> <p>○財務局長 孫長鎬 價格은 鑑定해서 精算을 합니다.</p> <p>○鄭興鎮委員 差額을.....</p> <p>○財務局長 孫長鎬 差額을 精算합니다.</p> <p>○鄭興鎮委員 그럼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을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差額이 얼마인가?</p> <p>○財務局長 孫長鎬 이것은 承認이 난 연후에 저희가 鑑定節次를 밟습니다. 밟으면 그 때가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p> <p>○鄭興鎮委員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財務局長 孫長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p> <p>○鄭興鎮委員 다음은 대신고등학교 안에 소지하고 있는 82坪을 占有者인 대신고등학교에 賣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占用料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p> <p>○財務局長 孫長鎬 이것은 議案이 좀 다름니다만, 占用料 賦課를 다 하고 있습니다.</p> <p>○鄭興鎮委員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p> <p>○財産管理課長 權赫模 그 資料는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요, 賦課하고 徵收를 다 했습니다. 別途로 報告해 드리겠습니다.</p> <p>○鄭興鎮委員 별도로 報告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無償使用 許可對象이 1件인데 鍾路區 都梁洞 95-1 垆地 345坪, 建物 325坪을 서울 地方警察廳에 無償貸付하려는 것인데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리고 아까 冒頭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地方..... 鍾</p>
--	--